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상정
- 제140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12월 11일) 원안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 윤순중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2007. 5. 11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의 용어나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기금수혜단체 대표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겠는가?	○ 기금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할 계획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83호
의결 년월일	2007. 12. 21 (제140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11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일부 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”를 “기금운용계획에 따라”로 하고, “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”를 “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융상품중”을 “금융상품 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며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하고, “10퍼센트이상”을 “10퍼센트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15인이내”를 “15인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천시의회 노인복지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인”을 “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”으로 하고, 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”을 “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”으로 하

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중에서 각 1인”을 “위원 중에서 각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 하며, “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”를 “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잔임기간으로”를 “남은 임기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”를 “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분의 2이상”을 “3분의 2 이상”으로 하며, “과반수이상”을 “과반수 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 개시전”을 “회계연도 개시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예절등”을 “예절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제반사업등”을 “제반사업 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”를 “노인복지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출납폐쇄후 80일 이내”를 “출납폐쇄 후 80일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천시 의회”를 “부천시의회”로 한다.

제13조 제목 “(관계규정준용)”을 “(관계 규정 준용)”으로 하고, 본문
중 “세입 세출외 현금”을 “세입세출외현금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복지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기금은 <u>다음 각호의</u>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잡수입</p>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<u>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</u> 운용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(부천시 노인복지기금)</u>로 관리한다.</p> <p>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은 <u>금융상품중</u>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·운용한다.</p> <p>③ 기금은 <u>당해년도</u>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<u>10퍼센트 이상</u>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.</p> <p>④ <u>제2조의 규정에 의거</u>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<u>다음 각호의</u>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국채, 공채, <u>기타</u> 유가증권 매입</p> <p>2. <u>기타</u> 기금 증식사업</p> 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</p>	<p>제2조(복지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의</u>-----</p>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 <u>기금운용계획에 따라</u>----- -----<u>제34조에 따라</u> <u>세입세출예산 외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금융상품 중에서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<u>해당 연도</u>----- <u>범위 내</u>----- --<u>10퍼센트 이상</u>----- -----.</p> <p>④ <u>제2조에 따라</u>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2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5.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<u>제반사업등</u>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11조(회계 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기금출납원 :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2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관은 매 <u>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시장은 기금운용 결산서를 <u>부천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관계규정준용) 기금운용을 위한 <u>회계관리</u>는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<u>세입세출외 현금 관리</u> 제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5. <u>그 밖에</u>----- <u>제반사업 등</u>----- -----</p> <p>제11조(회계 공무원) ① ----- -----<u>다</u> <u>음 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: <u>노인복지업무담당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결산 및 보고) ① ----- -----<u>회계연도</u>----- ----- -----<u>출납폐쇄 후</u> <u>80일 이내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부</u> <u>천시의회</u>-----.</p> <p>제13조(관계 규정 준용) ----- ----- -----<u>세입세</u> <u>출외현금</u>-----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</u> <u>에 필요한</u>----- -----.</p>